서 울 고 등 법 원

[redacted]

판 결

[redacted]

사 건 [redacted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

피 고 인 [redacted]

항 소 인 피고인

검 사 [redacted]

변 호 인 법무법인 태유 담당 변호사 조효동

원 심 판 결 [redacted]

판 결 선 고 [redacted]

주 문

1.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.

2.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.

 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